



프랑스의 성년 후견 제도 (I)

정보신청기관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팀

I. 서론

프랑스는 원칙적으로 18세부터 사망 시까지 성년으로 취급한다(프랑스 민법 제488조). 프랑스에서 성년이라 함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개인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이런 능력이 악화 또는 변질되어 본인의 이익을 위한 개인 능력을 단독으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 특정 단독행위 또는 지속적인 행위에 대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법의 보호에는 법정 보호, 재산관리인 제도, 후견인 제도가 포함된다. 이런 법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성년은 법에 의해 지정된 기관이나 다른 성인 즉, 후견인에 종속되며, 이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경제적 행위 및 법률적 행위에 관련된 대부분의 결정을 이행한다.

프랑스 민법은 법의 보호, 즉 후견인을 요하는 개인의 질병이나 무능력 상태를 자세하게 열거하지 않는다. 단지 판례를 통해서 후견인을 요하는 사례를 구체화할 수 있는데, 이런 사례로서 구체적인 결정을 하거나 이런 결정을 표명할 수

없는 장애 또는 무능력 상태, 인격의 장애 또는 인지능력(기억 상실, 일시적인 시공능력의 장애, 건망증, 노망, 뇌출혈로 야기된 장애, 알츠하이머병등)의 결합, 의사표현능력의 결합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프랑스 공중 위생법전(Code de la santé publique)은 공중 위생에 관련된 행위, 즉 환자의 기본 권리, 생의학 실험, 신체 조직 및 장기의 추출, 정신 병원 및 일반 병원 입원, 알콜 중독 등의 분야인 경우 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규정한다.

법적인 보호가 없을 경우, 상기 열거된 개인의 경우 개인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취할 수 있으며 이런 행위의 결과로 비이성적인 경제적 행위나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행하거나 또는 비정상적인 기부행위 등을 할 위험이 있으며, 프랑스 민법이 정한 법적인 보호, 즉 후견인 제도를 통해 해당 가족은 상기 열거된 행위들을 취소할 수 있다. 민법의 경우 오직 상기 행위의 피해자, 즉 본인만이 본인이 행한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행위를 신청할 수 있다(민법

제489조)고 하지만, 이미 본인의 행위에 대한 인지를 상실하거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보상행위를 신청하면 이를 위해 상거된 행위 당시 피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민법 제489조). 예를 들어 1993년 파기법원은 부동산 매매행위 당시 주기적이고 상습적인 알콜중독으로 인한 본인의 무능력을 인정치 않았다. 즉 민법상의 법적인 보호, 후견인 제도는 피후견인의 물리적인 행동을 제약하는 것이 아닌 경제적인 결정에 관한 능력을 제한하여 피후견인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프랑스 공중위생법상의 후견인 제도는 피후견인이 건강에 관련된 법률행위를 이행하는 것을 제약하여 피후견인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예를 들면 생의학적인 실험의 경우 법정 후견인, 재산 관리인 또는 법정 후견기관의 동의를 요하며 해당 의료연구기관은 실험에서 야기될 수 있는 피실험인의 정신적·신체적인 영향을 고지해야 한다(공중위생법 L. 1122-2).

본 글은 프랑스 법, 특히 민법과 공중위생법에 규정된 성년 후견인 제도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II. 성년 후견인 제도

1. 제도 내용

프랑스 민법은 성년 후견인 제도로써 다음과 같은 형태의 제도를 규정한다. 성년인 성인이 질

병, 장애 또는 노년으로 인한 신체의 약화로 인해 본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법적인 행위가 불가능할 경우, 그리고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 의사표현행위가 불가능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보호, 즉 법정 보호, 재산 관리인제도, 후견제도를 받을 수 있으며, 상기한 정신적, 신체적 장애는 의학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1) 법정보호(Sauvegarde de justice)

법정보호는 한시적인 의학적 또는 사법적인 보호제도이다. 위에 열거된 장애에 해당되는 성인의 경우 공중위생법에 규정된 조건하에서(공중위생법 L.3211-6), 즉 해당 성인이 정신적 장애로 인해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담당 정신과 의사는 공화국 검사에게 해당 성인의 상기 치료를 요하며 민법에서 규정하는 사법행위를 행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공화국 검사에게 제출하며, 이에 근거하여 공화국 검사가 제출한 인증서에 근거해 후견담당판사가 한시적인 기간동안 해당 성인의 법정 보호를 명령한다.

법정 보호를 받는 성인의 경우 법적인 권리를 유지한다.

법정 보호는 해당 성인의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민법 제491~491-3조).

(2) 재산 관리인(Curatelle)

재산 관리인 제도는 부분적인 감독행위제도이다.

- 단순재산관리인 제도

해당 성인은 단독으로 본인의 소득을 관리할

수 있다. 한편 피후견인은 재산관리인의 보조하에만 자본의 수납행위 또는 고용행위가 가능하다. 단순 재산 관리의 경우에도 법원의 결정에 의해 특정 행위가 금지되거나 허가될 수 있다.

- 강화된 재산관리인 제도

재산관리인이 피후견인의 소득을 관리한다. 단 피후견인의 예금계좌에 관한 행위의 경우 피후견인의 동의를 요한다. 피후견인의 거주주택의 판매나 임대계약의 취소의 경우 판사의 허가를 요한다.

(3) 후견인(Tutelle)

후견인 제도는 피후견인의 모든 법률행위를 대표한다. 즉, 사법적 감독하에 적법한 행정관리, 후견 담당 판사가 주재하는 회의에 피후견인 대표 및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행위를 행한다.

한편, 피후견인은 친권을 유지하며, 후견 담당 판사의 허가하에 행하는 특정 행위, 예를 들면 유서의 작성 등이 가능하지만 동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또한 투표 행위를 행할 수 없다. 후견인은 연간 관리 보고서를 후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예심법원의 심의를 거친다.

피후견인이 행한 법률 행위의 무효는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행위 당시의 정신적 장애의 존재를 입증해야 한다. 즉 행위의 무효는 당사자, 또는 법이 정한 후견인이나 재산관리인만이 주장할 수 있다. 만약 피후견인의 사후 피후견인이 생전에 행한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① 행위 자체가 정신적 장애를 명백하게 나타내는 경우 ;
 - ② 행위 당시 피후견인이 법정 보호하에 있었던 경우 ;
 - ③ 피후견인의 사망 전에 후견인이나 재산관리인이 임명된 경우(민법 제489-1조).
- 한편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는 성년의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490조).

2. 제도의 이행

프랑스 공중 위생법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성년 후견인 제도의 이행을 규정한다.

(1) 환자의 기본 권리

성년에 달한 성인이 법적으로 유효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정신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프랑스 공중위생법은 기본적으로 환자의 기본 권리에 관한 조항에서 성년환자가 후견인 제도하에 위치해 있을 경우 피후견인의 의학적 정보, 즉 관련 연구, 치료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정보를 후견인에게 개별적인 절차를 거쳐 고지해야 하며, 해당 성년 피후견인의 치료에 관한 결정시 피후견인은 결정 능력 정도에 따라 참여할 수 있다(L.1111-2).

환자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치료행위가 필요할 경우 해당 환자가 의사표시능력이 결여되었다면 위급한 경우나 환자 가족, 또는 환자의 법정 후견인의 동의가 없는 한 상기 치료행위를 행할 수 없다(L.1111-4). 또한 후견인의 동의없

이 피후견인이 치료나 입원을 위한 의사결정을 가족이나 친지 또는 담당 의사에게 위임할 수 없다(L.1111-6).

(2) 생의학 실험

의료 목적 또는 과학적인 목적을 가진 정신과 실험을 포함하는 생의학 실험의 경우 성년 후견 제도 하에 있는 피후견인은 해당 생의학 실험의 목적, 기간, 방식 또는 실험결과의 적용결과에 따라서 또한 피후견인의 이해 능력의 정도에 따라 또한 후견인의 동의하에 상기 실험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한시적인 법정 보호를 피후견인의 경우 상기 실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재산관리인의 관리하에 있는 피후견인의 경우 재산관리인의 동의를 요한다. 한편 생의학 실험의 결과가 피후견인의 사생활이나 신체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후견 담당 판사는 관련 정보와 피후견인의 적응능력을 심의한 후에 이의 참가를 결정한다(L.1122-2).

(3) 신체조직 및 장기 추출

의학적 목적이나 과학적 목적을 위해 피후견인의 신체 세포를 추출하는 행위의 경우 관련 정보를 고지받은 후견인의 동의를 요한다. 후견인의 행적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상기 고지행위는 면제된다. 그러나 상기 행위가 피후견인의 사후에 피부 세포 또는 배아세포의 추출은 허용되지 않는다(L.1211-2).

한편 타인의 치료를 위해 사법적 보호, 즉 법정 보호, 재산관리 또는 후견인제도 하에 있는

성년 환자의 피부 조직, 신체 세포나 신체조직의 추출, 골수 이식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후견인의 동의를 요한다(L.1241-4, L.1245-2).

피후견인의 사후에 치료 또는 과학적인 목적을 위한 장기 추출 또는 장기 기증의 경우 후견인의 동의를 요하며 만약 후견인이 현장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다른 법정 후견인이 서면동의에 의해 상기 추출 또는 기증행위를 할 수 있다(L.1232-2). 또한 추출되거나 기증된 장기 사용에 대해서도 후견인에게 정보를 고지한 후 후견인의 동의하에 이행된다(L.1235-2).

(4) 정신 병원 입원

민법 제490조에 규정된 정신적 장애로 인해 성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경우 담당 의사는 해당 환자의 법률행위로 인한 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환자의 상태에 대한 의견서를 치료지의 공화국 검사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이 의견서는 해당 환자를 법정 후견제도의 보호 혜택을 받게 한다. 정신 장애로 인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정신병원에 장기 입원한 환자의 경우 거주지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며 후견 담당 판사는 상기 장기 입원을 법정 후견인에게 통보한다(L.3211-5~8).

또한 법원은 장기 입원 환자의 배우자, 부모, 해당 환자의 이익을 위한 타인 또는 공화국 검사의 요청에 의해 해당 환자의 동의 없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담당 재산관리인은 피후견인의 원활한 치료를 위해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며, 피후견인의 법적 권리가 충분히 행사

될 수 있도록 감독한다. 한편 상기 재산관리인은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상속인 중에서 선임할 수는 없다(L.3211-9).

배우자, 부모 및 법정 후견인 및 공화국 검사 등은 정신병원에 장기 입원한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해 병원에서의 퇴원을 대심법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장은 대심심문을 거쳐서 즉각적인 퇴원을 명령할 수 있다. 또한 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여길 경우 피 후견인의 재입원을 명령할 수 있다(L.3211-12).

한편 제 3자, 즉 후견인의 요청에 의해 피후견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경우 후견인은 법원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피후견인과 후견인의 신원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L.3212-2).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퇴원을 요청할 경우 해당 병원은 피후견인의 즉시 퇴원을 이행한다(L.3212-11).

(5) 알콜 중독

성년 후견 제도의 관리를 받는 피후견인은 주류 판매행위를 할 수 없다(L.3336-1). 피후견인이 주류 판매 행위를 하다 적발된 경우 3750유로의 벌금을 과징하며 해당 판매점은 5년 이상 폐점한다(L.3352-8).

제도의 형식과 운용방식이 규정되어 있다. 특히 성년에 이른 성인에 관한 후견인 제도로는 법정 보호(Sauvegarde de justice), 재산 관리인 제도(Curatelle) 및 후견인 제도(Tutelle)를 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 공중 위생법은 민법에서 규정된 성년 후견인 제도에 근거하여 공중 위생에 관련된 여러 분야 즉 환자의 기본 권리, 생의학 실험, 신체 조직 및 장기의 추출, 정신 병원 및 일반 병원 입원, 알콜 중독 등의 분야에서 피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성년 후견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민법에서 규정된 프랑스 성년 후견인 제도는 2009년 1월 1일을 기해 시행되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미래 시점의 보호를 위한 위임장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인 군청에서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성인의 관리 감독, 피후견인의 재산 및 신체 보호 원칙의 인정, 법정 보호를 요하는 경우의 제한 및 일정 기간 후의 피후견인의 건강 상태를 재고하여 피후견인에 대한 최적의 보호 유도를 들 수 있다.

III. 결론

프랑스의 후견인 제도는 민법에 기본적으로

강 흥 진

(프랑스 주재 외국법제조사위원)